

## 성경적 법을 통한 법학 지평의 확대\*

이호선\*\*

### 논문초록

법이 속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답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법적 사고는 법을 개념을 실정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보며, 그 법의 속성에서 정의나 목적과 같은 가치는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 국가 내의, 그리고 국가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심화되는 불공정과 불의,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이 가져오는 사회갈등과 비용은 전통적인 법의 개념에 변화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법 개념의 변화를 위해서는 전통적 법 개념이 갖고 있는 실정 법적 구속력이 법 개념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법은 전반적인 사회적 틀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복합적 규범 체계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을 이해할 때 현대적 법학은 성경적 법과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며, 성경적 법으로부터 풍성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법을 과거의 어느 한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내지 기독교라는 종교적 틀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법이 갖는 역사성과 보편성을 간과한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속성, 기준질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통한 변혁의 동력, 법 제도에 대한 입체적 시각, 내면의 규범 준수 의식의 확장은 여타의 실정법적 사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성경적 법만이 갖는 장점들이다.

더구나 성경은 현대적 법에서도 최고의 지도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정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정의의 원천을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께 둘으로써 분쟁해결에 객관성을 더할 수 있다. 부하고 강한 자들은 성경에 호소하지 않고도 그들의 뜻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의 기능을 침해된 권리의 회복 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두며, 정의 실현의 책임을 소수가 아닌 모두에 지우고, 법정 송사를 마지막 수단으로 보류한다는 점에서 성경적 법은 현대적 법학이 지향하는 바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별성을 성경적 법이 지금의 법실증주의에 경도된 법학의 지평을 열어주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주제어 : 성경적 법, 모세오경, 법 개념, 현대 법학, 법실증주의, 정의.

\* 이 글은 2014. 11. 8.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에서 필자가 법학 분야 분과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유익한 코멘트를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린다.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14년 11월 11일 접수, 1월 10일 최종수정, 1월 11일 게재확정

## I. 들어가며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고 있다”는 칸트의 말처럼 법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법은 입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 사회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의 세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식의 정의(定義)는 법의 틀을 실정법에 제한시켜 놓음으로써 법학의 역할을 법해석학에 묶어 두면서 우리의 시야를 “있어야 할 법” 대신 “있는 법”에 집중시킨다. 법과 법학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은 양극화와 불공정성의 심화라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의식의 약화로 인한 분쟁의 증대와 관계의 단절이라는 병리현상에 법이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성경이라는 텍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적 원리<sup>1)</sup>들이 협소한 현대적 법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업이 과연 법이 있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그리는데 기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바로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법 실증주의적 사고 하의 법 개념의 재검토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통적 법 개념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제3장을 통해 성경적 법의 내용과 특징을 다루기로 한다. 특히 제3장에서는 성경적 법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입견과 오해를 해명하고, 나아가 성경적 법이 갖는 장점들, 그리고 현대 법학에로의 수용이 가능한 성경적 법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볼 것이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성경적 법과 현대적 법과의 차별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이를 통해 지금의 법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성경적 법이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설득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

---

1) 성경적 법의 내용과 그 범위에 관하여는 본문에서 따로 보겠지만, 일단 이 글에서 ‘성경적 법’이라고 할 때는 신, 구약의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 및 그것에서 도출할 수 있는 법적 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 II. 현대적 법 개념과 과제

### 1. 실증주의 법 개념의 재검토 필요성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법학자나 실무가들에게는 가장 해묵은 질문이면서 답변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법 개념이라고 한다. 법이념이 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한다면 법 개념은 법의 속성 자체를 말한다(Radbruch, 1959: 3; 홍영기, 2005: 118에서 재인용). 라드부르흐 아래로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은 크게 정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합목적성으로 이해되어 왔고(양수산 외, 2010: 34-47), 법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1) 법률로서 확정되어 있을 것, 2)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 3) 도덕적 덕성을 갖추고 있을 것, 이상 세 가지를 들 수 있다(홍영기, 2005: 119). 그러나 실증법학이 학문적 대상과 접근방식 모두를 차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의 법학에서는 위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인 도덕성의 구비요건에 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법이란 인간의 공동생활을 구속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 내용은 형식적이며 가치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남기윤, 2011:8). 이런 관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콜만(Coleman)의 이른바 “문진(文鎮)의 비유이다(Coleman, 2003:194).

콜만에 의하면 법은 그 속성상 일정한 도덕적 이상(理想)을 실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법에는 그런 내재적 능력이 있는 까닭에 법을 분석한 결과 그 속에 ”도덕적으로 매력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법은 뭔가 결핍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도 된다(Coleman, 2003:195). 하지만 망치가 문진(文鎮)으로 쓰일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을 갖고 있거나 문진으로서 적합하다는 것과 곧 문진을 망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콜만의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흡인력이 법 속에 있다고 하여 도덕성이 법의 개념의 본질적 요소라거나 법이론의 분석에서 반드시 도덕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콜만의 다음과 같은 말은 법 개념의 물가치 내지 물도덕성을 주장하는 대다수의 실증법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법의 속성에서) 자율성, 존엄, 복지는 분석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밖의 어떤 도덕적 속성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상들은 법개념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으며 법이란 단지 그것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우연히) 작동할 뿐이다(Coleman, 2003:192).”

콜만에 의하면 마치 망치가 문진으로 쓰이거나 정원의 장식용 소품으로 쓰인다고 해서 그것이 망치의 속성이 아닌 것처럼 정의는 인권, 존엄 및 복지와 같이 법의 속성의 외적 요인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피니스(Finnis) 같은 법철학자는 콜만의 주장은 법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극단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망치의 경우엔 그것을 쓰는 사람이 문진이 되었건, 정원 소품이 되었건 의식하지 않고 평생을 쓸 수 있지만, 법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어떤 범인가?”라는 법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유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피니스에 따르면 법은 사회에서 공통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법과 타인이 생각하는 법의 정확한 틀을 알기를 원한다. 사회 내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선택의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Finnis, 2011:43). 나 혼자 갖고 있으면서 창고에 두던지, 책상에 두던지 편한대로 할 수 있는 망치와는 다른 것이다. 콜만 식의 주장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망치의 속성은 못을 박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저 망치에 못을 박을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이 있을 뿐인 것이다. 무엇을 부수거나 깨뜨리는 것도 망치의 본질은 아니며, 결국 망치의 개념 속에 들어갈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형해화된 개념만이 남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종이로 만들거나 솜으로 만든 망치는 모양이 망치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실존하는 망치 개념과는 구분한다. 그 개념은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로서 다른 물체와의 충격을 잘 견디는 도구”라는 속성을 본질로 한다. 이 속성이 다양한 용도로 발현될 뿐이며, 이 속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망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의 속성에서 도덕성이나 정의를 제외할 때 실정법이 갖는 정당성은 자기기술(self-description)적 성격을 띠게 된다. 실정법은 시간에 따라 내적 및 외적으로 변식하면서 하나의 ‘법률체제(legal system)’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법이 체계적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법은 정당하다’는 동어반복 속에 모든 가치평

가로부터 자신에 대한 방어막을 둘러친다. 다시 말해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 속에 법이 정당화되고, 그 정당화된 법은 영구화되는 것이다(Philippopoulos-Mihalopoulos, 2010: 72). 이런 식의 논리는 실정법의 약점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지만 그 자체로 불의할 수 있다(Luhmann, 2004: 105; Philippopoulos-Mihalopoulos, 2010: 78).

이른바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무소불위의, 그러나 매우 변덕스럽고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수사를 방패막이로 하여 정당성에 관하여 던져지는 많은 의문들을 억누르는 횡포를 벗어버리고, 법이 갖추고 있어야 할 원래의 모습에 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법 개념에 관한 기계적, 형식적 사고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법 개념의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법 개념에 관한 이론적 구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지침을 제시하고 정치 사회적인 환경과 제도 속에서 인간성을 발현시키기 위해 법이 지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법적 담론을 가치중립적인 것에 묶어두려는 시도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한다 (Halberstam, 2013: 56-7). 나아가 성경에서 제시되는 법규범은 우리의 지적 편협성을 극복하도록 하며 창조 시로 부터 부여받은 인간 공동체의 모습에 법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원리들을 통해 작동되는지 보여준다. 이 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법은 확실히 목적 지향적이며, 가치 지향적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법 개념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 지평의 확장이 필요한 긴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특정 국가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양극화로 대변되는 불공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 있다. 효율성은 인정되지만 반면에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요소를 안고 있는 시장경제의 문제점<sup>2)</sup>, 자산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빈부 격차의 심화(Hahnel, 2005: 135), 자원 배분을 놓고 벌어지는 세대간의 갈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Sabbagh al., 2010: 639)는 일련의 사회적 '규칙(rule)'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하

2) 경제학적 관점에서 신경을 쓰는 것은 한 사회의 총효용이 줄어드는 것이지, 사회 내에서의 효용이 이동하는 이른바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다만 분배의 영역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독점이 규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 총효용이 줄어들도록 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일 뿐, 소비자에게서 독점사업자로의 부의 이전과 같이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자원의 이동은 관심 밖의 일이다(Hovenkamp, 2011: 88-89).

고 있다. 게임의 규칙이 불공정하다는 소리는 해마다 발표되는 지구촌의 자산 불평등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61년 출간된 ‘법의 개념(The Concept of Law)’라는 책을 통해 이 분야의 고전을 썼다고 평가되는 하트(H.L.A. Hart)는 준법의 문제, 다시 말해 법은 단지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준수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를 궁정할 수 있기 위한 유일한 토대는 공정성(fairness)이라고 한 바 있다(Hart, 1955: 56). 하트가 법개념에서 정의나 공정 같은 가치지향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런 시각은 다소 의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건 하트의 말에서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자발적 준법과 승복이야 말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매우 실용적인 접근이며, 따라서 실정법을 포함해 기준의 일련의 사회 규칙들을 재평가하고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기 어렵지 않다.

## 2. 전통적 법 개념의 확장

법 개념에 정의가 본질적 요소로 포함된다고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률로서의 확정과 강제력이 수반되는 구속력을 또 다른 필수 요소로 보아야 한다면 실정법에 경도된 시각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근대 법철학에서 법은 일종의 정신적 지령의 확장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Allott, 2002: 45–56).

법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지금도 그 범위와 성격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을 사회의 매우 복잡하고도 누적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내는 수단으로서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입법적 기술과 과정을 거쳐 나온 법률들, 그리고 구속력이 부여된 실정법들만을 법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유용한 접근이며 법학의 기능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법학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sup>3)</sup> 지금의 법학의 담론은 한 국가의 실정법을 넘어서 전개되어야 한

3) 법설증주의는 2차 대전 이후 과거의 형식적 법설증주의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기본권 내지 인권 개념의 법 해석의 지도원리가 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주로 현

다. 왜냐하면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한 지금의 글로벌 경제 체제 내에서 불의 역시 국가들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제어하고 규제하여야 하는 게임의 규칙 역시 초월적인 단계에서 논의되어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 개념의 범위를 몇 가지로 나눌 때 전통적인 법 개념은 가장 협의로 분류될 수 있다. 정의라는 가치적 요소까지 배제한 실정법이 그것으로 이른바 “법으로서의 법 (law as law)”에 해당한다(Allott, 2002: 56). 이때의 법은 사회적 및 도덕적 고려에서 절연된 폐쇄적 법이며, 국가의 주권과 대다수 시민들의 관행적 복종이라는 사회적 사실로부터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명령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법 개념의 지평을 약간 더 넓힌다면 법은 여러 사회 제도들 가운데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사회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로서의 법(law as society)”의 관점인데, 여기서 법과 사회는 거의 동의어가 된다(Allott, 1998: 397). 다시 말해 법의 의미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견되고, 사회적 상황은 법과 법적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식의 관점은 마르크스에게서 두드러진다. 마르크스에게 법은 물질적 현실의 상부 구조의 일부이고 생산에 필요한 물질적 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Marx, 1859/1976).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을 특정한 사회의 법을 초월하여 시공을 불문하고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질서를 망라하는 그 무엇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것은 “사회 초월로서의 법 (law beyond society)”이라 할 수 있는데, 고대 로마와 중세 시대,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전통적인 자연법학자들에게서 이런 시각을 볼 수 있다(Allott, 2002: 56).<sup>4)</sup> 이들은 인류를 위해 ‘선(good)’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가치 있는 삶을 접목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 지평을 최대한 확장한 최 광의의 법을 들 수 있다. 이때의

---

법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실정법의 내연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크게 법실증주의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대 로마의 경우 키케로, 중세 시대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현대의 법학자들 중에는 존 피니스, 헤르만 도여베르트 같은 이를 들 수 있다. Marcus Tullius Cicero, *De Re Publica: Selections*, Cambridge Greek & Latin Class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Sain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A Concise Translation*, (Timothy McDermott ed.; London: Eyre and Spottiswoode, 1989);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2001).

법은 우주의 숨은 질서의 일부로 이해되며 “우주적 질서로서의 법(law as universal order)”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인식 하에서는 모든 사물의 단위와 질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것은 그보다 상위 실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숨은 실재 역시 우주적 질서의 일부이며 그것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철학이나 신학, 어느 관점으로 이해하건 간에 모든 것의 종국자와 만나게 된다. 이런 사상의 대표적 주자로는 플라톤과 네델란드의 기독교 법철학자인 헤르만 도여베르트<sup>5)</sup> 등을 들 수 있다. 플라톤 경우 그는 우리가 부르는 “정의”와 “선”은 “궁극적 정의”와 “궁극적 선”的 현현(顯顯)이라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법과 사회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궁극적 존재인 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법의 속성에 관하여는 근대법의 사상적 전통에 의하더라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실증주의로부터 플라톤식 우주적 보편법칙까지 다양하다. 법을 단지 처벌의 근거 규범으로만 보거나 분쟁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획정하는 도구 외에 다른 무엇으로 보는 것을 꺼려한다면 전반적인 사회적 틀 속에서 법이 갖는 복합적 성격에 대한 이해에 실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법 개념의 점증적 전개는 폐쇄적 실증법적 사고에 숨통을 트워줄 뿐 아니라 성경적 법이 실정법의 원리로 논의되고 상호 교차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말은 법 개념의 인위적 해체와 재구성이 성경적 법의 실정법적 수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본 법개념의 점증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적 법은 그 자체로서 실정법의 정당성을 내적으로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을 바꾸어 보기로 한다.

### III. 성경적 법의 내용과 특징

#### 1. 성경적 법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

---

5) <<http://www.allofliferedeemed.co.uk/dooyeweerd.htm>> Herman Dooyeweerd. 1997.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Edwin Mellen Publishing 참고.

### (1) 성경적 법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문제

성경적 법의 규범성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에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성경적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었던 규범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상의 표현에 그쳤는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성경적 법이 과연 실제로 사회 내의 ‘공동 관행(common practice)’으로 적용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던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적 법은 어떤 점에서는 유토피아 또는 이상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가나안 입성 이후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회고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해서<sup>6)</sup>, 예컨대 레위기 25장의 희년에 관한 내용은 결코 현실적으로 실현된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sup>7)</sup> 신명기의 명령들은 그 규범이 현실적으로 이뤄졌다가 보다는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의 정반대의 탐욕스러운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임상국, 2012: 28–9).

성경의 저자들이 응당 그래야만 된다고 믿었던 법의 이념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실제로 있었던 법(관행)과 충돌이 있었으며 성경적 법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드러나듯 이스라엘 공동체는 형성 당시부터 이미 다원주의적 사고와 문화에 둘러 싸여 있었고 일정 부분 그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6) 모세 오경의 편집 시기에 관하여 바벨론 포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주장들에 관하여는 왕대일, 2011: 5, 각주 1을 참조.

7) Karl Elliger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Karl Elliger, *Leviticus,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4* (Tübingen: Mohr, 1966).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세 오경의 편집 시기가 성경적 법의 규범성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서사적 전개 방식, 정결례나 제사법, 성막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등은 이미 그 당시까지 구체적으로 전승되어 내려 오지 않았다면 기술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리고 만일 희년이 전연 새로운 개념이었고, 삽입조에 관한 장면에서 많이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역사 속에서 경험적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면 포로가 된 이방 땅에서 이런 개념들을 굳이 창작(?)할 이유도, 동기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편집자들이 의도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민족적 희망, 구원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현재의 후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해 역작용만 컸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라도 없이 포로된 자들에게 희년이나 삽입조를 통한 축제, 약자를 위한 저축 등의 메시지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재와의 간극만을 더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였을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언약에 따라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였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성경적 법과 다른 길로 가는 불순종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성경적 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현실의 간격은 더욱 커져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성경적 정의의 이상과 인간의 실패는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는데 왕들 자신도 정의의 구현자라기 보다는 정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음을 성경은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사야나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은 사법제도 내에 고질적으로 부패와 뇌물이 성행하고 있다고 책망하였다(이사야1:23, 5:23, 미가3:11, 7:3).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하는 ‘성경적 법’과 왜곡되어 실제로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법, 즉 ‘소위 성경적인 사회라고 불리웠던 공동체의 현실적인 법’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Jackson, 1984: 29).

그러나 성경적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성경적 법의 적용이 전혀 시도된 바 없다는, 즉 성경적 법의 원시적 불이행이나 원시적 이행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성경적 법이 현실로 한번도 적용된 바 없다는 추론이 맞는다면 거꾸로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법이 갖는 독창적이며 초월적인 성격을 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예에서 보듯이 성경적 법의 정신에 일부라도 부합하려 하였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시대의 공동체는 매우 건강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성경적 법의 일부의 실행이 그렇다면 온전히 이행이 가져오는 효과는 더 컸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성경적 법의 현실적 적용에 실패하였다면 인간의 실패이지, 명령자의 원시적 불능의 강요는 아니었다. 성경의 법은 성경적 이스라엘 사회 규범의 일부만을 제공하였더라도 그 사회의 이상과 관행을 재건하기 위한 원천규범으로서, 즉 실제 시행되고 있었던 법적 관행들의 근거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Jackson, 1973: 29).

법과 현실의 괴리는 성경적 법과 고대 이스라엘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지금도 현대 실정법규법들과 현실 사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충돌과 위반이 있으며 때로는 법 위반의 관행이 갖는 힘이 더 큰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의 존재나 기능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경적 법이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적용된 바 없다는 주장이 성경적 법의 규범성을 약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다.

## (2) 성경적 법의 보편성 문제

성경적 법은 종교적 용도로, 이스라엘의 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성경적 법을 일상적 규범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의도 속에 있는 잠재적인 시각은 성경을 종교적 텍스트로 국한시키며, 성경적 법을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 내지 기독교인들 사이의 종교 윤리적 규범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스(Robert Adams)의 다음과 같은 말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 상황의 국외자로 있지 않다.

“의무란 개인적인 관계망 또는 관계망의 집합인 사회 체제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의무들이 완전히 도덕적인 유효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거룩한 명령에 의해서 구축된 체제 내에서만, 그리고 그 명령자가 주도적으로 사회질서에 참여하고 있을 때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사회체제는 속성상 우주적이며 창세로부터 존재해 왔다(Adams, 2001: 233).”

우주는 사회적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은 사회적 관계와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의무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거룩한 명령들을 보편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택함을 받았으며, 성경적 법의 현실 적용이 가져오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다른 공동체들에게 제시할 의무를 갖고 있었다. 창세기 18장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니....(창세기18:18-9)”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의 사례들은 추후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는데, 여호와에 대한 경외를 담은 제사법과 같은 종교적 명령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례들은 공정한 송사, 약자에 대한 보호, 형제에 대한 자유의 부여, 자산의 균등, 부패와 뇌물로부터의 자기 단속 등을 담고 있다. 십계명은 완전히 사회적 상황 속에 뿌리를 둔 대표적인 성경적 법으로, 명령자인 하나님은 이를 통해 만들어 가는 사회에 이스라엘 구 성원 모두를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도록 허락하셨다(Miller, 2010: 27).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경적 법이 주어진 까닭에 이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전연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성경적 법이 그보다 앞서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고대 중근동 지역의 법률문서 및 법문화와 유사하다고 해서, 심지어 일부 그것들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하여 성경적 법의 권위나 진실성을 의심하거나 경외에서 주춤거릴 이유가 없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인간의 사회적 질서에서의 주도적 참여 자로서의 역할은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전의 창조시부터 있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있던 구약의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창세기14장)과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과 별도로 하나님과 통하여 였던 선지자 발람(민수기22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결정적으로 이방 미디안 족속이지만 모세의 장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법 제도의 틀을 제시하였던 이드로의 이야기(출애굽기18장)는 성경적 법이 배타적인 종교 법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범 집단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성경적 법은 매우 지혜롭고 공정하여 사리에 적합하게 적용되어 정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적 법들이 공정하고 지혜로운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 속성이 드러나는 것은 현실적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른 말로 성경적 법을 현실로 적용하여 시범을 보일 의무가 있었던 이스라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실천해도 똑같은 지혜와 공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창조주에 의해 정립되어 작동 중인 우주의 자연법칙이 미치는 대상에 예외가 없듯, 지혜로운 사회 규범으로서의 성경적 법을 실천할 때 개인과 공동체는 현실에서 똑같은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다(Miller, 2010: 32). 물론 이는 믿음을 통한 영적 차원의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공동체의 사회 규범에 관한 한 성경적 법은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법이 한 공동체 내에서 계층 간 구분 없이 보편적 적용성을 갖는지 살펴보자. 특정인, 특정 계층에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면 규범으로서의 정당성을 지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로부터의 명령의 형식으로 주어진 성경적

법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수범자(受範者)들의 충성 맹세의 대상이 오직 명령 제정자인 여호와께로만 향한다는 것 이었다(신명기13: 2-12). 당시 앗수르를 비롯한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맹세는 왕을 향한 것이었다(Otto, 1999). 신명기 17장은 왕위에 오른 자는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음으로써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sup>8)</sup> 이스라엘에 있어 인간 통치자는 단지 공동체의 일원이며,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언약 아래 동일하게 복속되는 존재일 뿐이었다(Miller, 2010: 29). 현대적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말 중의 하나는 “법 위에 사람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성경적 법은 수범 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 고대 이스라엘에 일찍부터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 2. 성경적 법의 장점

### (1) 지속성

성경의 법이 주목할 만한 하나의 법 체계로서의 가치를 지닌 이유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해석되어 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경의 법 보다 역사적으로는 더 오래된 기원전 2천년 경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르(Ur)’의 왕이었던 ‘우르남무(Ur-Nammu)’의 법전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실종되었다가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한 세기 전이었다. 반면 성경의 법이 현실의 규범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나아가 토라가 모세에게 주어졌던 기원전 1,3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 성문의 토라 이전에 이스라엘의 부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그 후손들의 관습법들도 토라로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경적 법이 갖는 잠재적 역사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파악된 기원전

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래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신명기 17:18-20).

2천년 초 이집트와 레반트(Lевант) 지역의<sup>9)</sup> 생활상과 문화는 모세 오경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법이 갖는 역사성을 더 확장시켜 주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성문의 성경이 갖는 연대 및 역사성을 둘러싼 논쟁, 구술 전승과 성문 율법의 상호작용, 그리고 기존의 중근동의 다양한 기록문서들과 성경 텍스트간의 상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법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놓고 볼 때 고대의 법률 체제들 중에서도 지속적인 역사성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은 염연하다(Burnside, 2011:20).

특히 바벨론 포로기 유대 신앙 공동체는 “모세의 토라”를 유대 사회의 경전으로 삼아 신앙생활의 지침서로만 삼지 않고 온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법철학으로 삼았었다(왕대일, 2011: 27).

아주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경적 법은 최소한 예루살렘의 함락된 1세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포되어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용에 있어서 이상과 실제와의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들에 의해 성경의 법은 최종적인 지도 원리로 정기적으로 선포되어 왔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어떤 고상한 가치나 덕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그 가치나 덕목이 무의미하다거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성경적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준수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그 지속성은 면면이 이어져 왔고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고대의 법 규범도 따라올 수 없다. 특히 성경적 법은 서구가 기독교화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에의 적용이 시도되었다. 예컨대 레위기의 희년 제도는 로마 카톨릭에서 성년(聖年)으로 수용되어 1300년부터 기념되었는데<sup>10)</sup> 이 성년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로마를 찾은 사람

9) 레반트(Lевант)는 아나톨리아(Anatolia)와 이집트 사이의 동 지중해 연안지역으로 지금은 키프러스,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틴 및 터키 남부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지역적 개념은 광범하여 시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서아시아, 동지중해, 북동 아프리카 및 아라비아 반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Levant>>

10) 이 성년은 100년마다 기념되도록 하였지만 교황 클레멘트 6세에 의하여 50년 주기로 단축되었고, 교황 바오로 2세(1464-1471)에 이르면 25주년 주기로 되었다. 루돌프 볼페르프 저 (안명옥 역), 교황사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1.

들이 2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Moatti, 1999: 21). 제도적인 면에서도 정기적인 휴식의 권리(안식일 내지 주일), 법정에서의 선서와 같은 제도는 현대 법 체제 내에 그대로 남아 있다.<sup>11)</sup> 한편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근대적 법은 1895년 이후 서구의 법을 도입한 일본을 통해 이식된 것이었다(최종고, 1994: 305). 그리고 “프랑스 근대법은 일본 근대법에 있어 단순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 근대법사의 전사(前史)(미즈바야시, 2009: 59)”라는 말이 상징하듯 우리에게 전해진 일본법은 서구법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상태였다. 이는 우리의 근대법의 역사 역시 성경의 법이 도처에 흔적을 남기고 있던 서양의 법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해방 후 미군정을 거치고, 미국과 냉전 시대 민주진영인 서유럽을 경제 교역을 비롯한 외부 세계와의 주요 관문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법 체제에 대한 기독교 정신을 역사적 바탕으로 하는 법률문화의 영향은 더욱 커졌다. 한마디로 성경의 법이 갖고 있는 지속성을 현재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2) 사회변혁의 동력 제공

성경적 법은 매우 다양한 가치들과 전제들로 구성된 사회의 법을 고유한 스펙트럼에 비춰 보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미 확고하게 이뤄 놓은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합의에 대하여 “과연 그러한가? 당연한가?” 그리고 “그것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한다. 무엇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존재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성경은 아름답게 창조된 이 우주의 질서가 인간의 원죄로 인해 왜곡되었고, 창조주에 의해 새롭고도 온전한 회복이 이뤄지기 전에는 그 왜곡은 여전히 잔존하거나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예레미야 17:9)”을 갖고 있는 인간들

11) 1540년 영국 왕 헨리8세는 민수기 35장을 모델로 하여 일곱 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으며, 뉴 잉글랜드에 정착했던 초기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공동복리(commonwealth) 규범도 성경의 법 체제를 본 딴 것 이었다.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Gabriel Sivan, *The Bible and Civilization*(Jerusalem: Keter, 1973)

이 만든 제도와 질서라면 그 안에 본질적으로 일정한 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그래서 성경적 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존재하는 세상이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실재한다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었던 것 일 뿐, 있었어야 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성경적 법을 통해 우리는 상상하고,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된다. 채무를 탕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고유한 생산 수단에의 접근을 통해 자유인으로서 독립성과 책임을 갖고 살게 하도록 하자는 데위기 25장의 내용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보이게 할 정도이다. 지난 세기 말 40여개 국 이상에서 벌인 바 있었던 2000년까지 제3세계가 서구의 부국들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하여주자는 이른바 ‘희년 2000(Jubilee 2000)’ 같은 운동은 성경적 법이 갖고 있는 혁명적 역동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성경적 법에 나오는 언어들은 “모루에 두들겨지고 단련되어 나온 불의 편지”로서 세상 권력의 횡포를 진노의 홍수로 휩쓸고, 거룩한 분노의 소리를 발하며, 하늘 저 사방으로부터 폭풍을 불러와 악의 성채들을 박살내도록 한다(Katsh, 1977:49).

### (3) 법에 대한 통시적 접근

법학을 연구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것 중의 하나가 현대 법학을 압도하고 있는 법실증주의 영향으로 인해 편협한 영역주의와 자기준거적 연구(self-referential study)에 빠질 위험이다(Dworkin, 2002: 1655). 이럴 경우 법적 사고는 자신만의 좁은 관점에 갇히게 되어 실제로 법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법의 총체적, 복합적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특정 국가의 실정법 체계 중에서 형법, 민법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산재된 법학에 특화되어 지엽적인 안목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각 과목들이 분리되어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될 기회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 큰 원인을 제공한다. 이에 반하여 성경적 법은 오랜 시간을 두고 법이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입체적으로 법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성경적 법은 견본으로 주어진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 공동체의 흥망성쇠와 법의 상관관계 및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줌으로써 법

률가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뿐만 아니라 법률가의 이상,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킨다. 이는 실정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유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경적 법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식의 전환이라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법적 쟁점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기회를 준다.

#### (4)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

성경의 법은 그에 대한 복종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응답이며 관계 속에 이뤄지는 적절한 반응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신명기 24장은 가난한 자에 대한 담보 제한법, 임금지불법, 공정한 재판, 추수성수법(이호선, 2013: 226-230)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를 지켜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신명기 24:18).”<sup>12)</sup>

준법은 강제가 아닌 자발성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교훈은 신명기 6장의 모세의 말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모세는 후일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 출애굽의 과정을 요약하여 그것을 답으로 주라고 가르치고 있다. 원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어야 하는 모범답안은 쉽게 명 또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반복하거나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주석을 달아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새겨주라고 하였다. 거기에서 비롯된 경외와 감사가 법을 지키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 법에 대한 준수는 수님자들의 입장에서 “항상 복을 누리며”(24), “의로움”(25)이 된다. 거룩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실용적이면서도 목적론적이다(Miller, 2010: 29).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준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근본적인 방식이라는 성경의 고유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 준법의식의 부재는 감시와 원상회복이라는 사회적

12)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의 준법의무는 과거에 대한 회상과 감사의 반응에 있다는 구절은 모세 오경에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레위기 26:12-13, 26:44-45. 신명기 15:15, 16:12.

비용을 가져온다. 역사의식을 통해 내면화된 경외와 감사, 그리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타인을 보는 배려가 바탕이 되는 준법의식은 가장 바람직한 법치주의 구현의 이상을 보여준다.

### 3. 성경적 법의 내용과 범위

성경적 법이라고 할 때 바로 떠오르는 것이 토라(**תורה**: Torah)이다. 히브리어로 토라는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보여주다, 지시하다, 지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일반적으로는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좀 더 좁은 의미로는 율법(law)을 지칭한다(Falbusch, 1997: 509). 원래 가르침으로서의 토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교훈으로 전승에 의한 세대 간의 경험과 지혜의 전달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왕대일, 2011:6). 성경에서 토라가 레위기 6장 9절 및 14절과 같이 단수형으로 쓰일 때는 법이라는 의미보다는 의례라는 뜻을 갖고, 십계명과 같이 하나의 특정한 율법 체계를 가리킬 때는 복수형으로 쓰였다. 토라가 최협의로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율법이라는 뜻으로 이용될 때는 계명이라는 의미의 미츠바(**מצוות**: Mitzvah)와 나란히 쓰이기도 한다(예, 출애굽기 24:12).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토라는 613개의 명령과 금지로 되어 있다고 한다. 유대적 전통은 공식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모세 오경, 선지서 및 문학서로 분류하는데, 이 때 토라는 모세 오경과 동의어로 쓰인다. 이때의 토라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오경에 있는 여러 장르들, 즉 서사, 시가, 죽보 등을 포함한다(Falbusch, 1997: 509). 이런 관점에서 토라의 개념은 단순히 율법이나 율법서로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서사적 법이자, 법이면서 서사성을 띠고 있는 총체적 규범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김선종, 2011: 22).

서사와 율법의 혼재는 고대 중근동 여타 지역의 법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고대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기 표현의 방식이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이해할 수 있다(왕대일, 2011: 9-10). 그래서 토라는 모세 오경을 넘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이해되기도 한다. 특히 신명기에서의 토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 레위기의 토라에서처럼

종교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영역별로, 주제별로 해설하는 개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르침(계시)을 통틀어 토라라고 부르면서 토라의 통일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왕대일, 2011:9-10). 한편 유대교 전통에서 토라는 잠언 8장에 나타나듯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한 것으로 만물의 존재 근거라는 궁극적 원인으로도 이해되었다(Falbusch, 1997: 509).

이 경우의 토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있었던 ‘말씀’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범하고 다양한 토라에서 성경적 법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추출해낼 수 있을까? 간명한 방안은 토라 중에서도 현대적 법의 형식을 갖춘 작위와 부작위의 명령 체계를 갖춘 부분만 추려내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성경의 법이 서사적 맥락 속에서 기록되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예컨대 상속에 관한 기록(민수기 27: 3-4), 신성모독에 대한 즉결재판 사건(레위기 24: 10-23)이나 그 밖의 각종 제의법이나 정결에 관한 규정들은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지혜와 정신을 상위의 원리로 도출하지 않은 채 현실적 법 규범의 원리로 가져 올 수 없다. 따라서 형식적인 규범성을 갖춘 계명 모두가 기계적으로 성경적 법으로 주장될 수는 없다.<sup>13)</sup> 반대로 형식적으로는 법적 형식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에서도 성경적 법은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좋은 사례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가르쳐 주신 이혼에 관한 법에서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 중에서도 법적 성격이 가장 열다고 여겨지는 창세기 1장의 아담과 하와 부부의 이야기를 끌어와 전통적인 토라가 제시하고 있는 것 이상의 강력한 법규법 하나를 제시하였다. “하나님이 짹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 할지니라” (마태복음 19:6).

토라의 정신에 충실히 현실에 적용 가능한 법적 원리들을 도출해 내라는 명령은 이미 신명기에서 주어진 바 있다. 신명기 6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모세는 이스라엘에 준수하여야 할 바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당부하고 있다.

---

13) 이 말은 성경의 종교 제의적 법 규범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다. 제의 규범에도 공평과 정의라는 법적 지도 원리는 깔려 있을 것이며, 이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야 말로 크리스천 법학자, 법조인들의 몫일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신명기 6:17-18)

이미 모세는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나 제시된 것들이 공동체나 개인이 살면서 부딪치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한 맞춤형 답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성문화된 토라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었다. 토라는 성경적 법으로서 직접적인 행위 준칙이 되기도 하지만, 나아가 핵심적인 원리들을 찾고 발견하도록 하는 지침이면서 또한 당신의 백성에게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창조주의 신뢰의 문서이기도 한 것이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토라의 정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구현하신 분은 예수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태복음 5:17)

이 말씀은 우리 역시 토라, 즉 성경적 법을 볼 때 형식에 갇히지 않고 그 바탕을 이루는 맥락과 핵심 메시지를 통일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적 법이란 하나님께서 신, 구약을 통해 주신 명시적 및 묵시적 지침의 총체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목적 지향적 가치 규범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 IV. 성경적 법과 현대적 법의 비교

##### 1. 성경적 법 속의 정의

실정법의 이념 중에서 정의를 우선적으로 꼽듯이 성경적 법의 최고 지도 원리 역시

정의이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데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창세기 18:19).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의는 소명이었으며, 그 소명은 이념적으로는 하나님 이 정의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신조로, 실천적으로는 그 정의의 실현은 사람을 통한 바른 사회 규범의 정립,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공정한 판결로 통해 드러난다는 정서로 자리 잡고 있었다(Burnside, 2011: 104). 현실적으로 항상 의도한 바대로 실천되지 않았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불의한 구조와 부패하고 무능한 정의의 매개자들, 즉 정치지도자들과 판관들, 제사장들에 대한 질책은 매서웠지만,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가 공동체에 실현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간과되지 않았다. 시편 82편은 성경적 법에서 정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잘 보여주고 있다.

(1)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2)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3)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5)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혼들리도다 (6)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 (8)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시편 82편)

신약성경, 성서고고학 등의 권위자인 존 도미니크 크로산(John Dominic Crossan) 같은 이는 시편 82편을 한 장으로 된 성경 중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평가한다 (Crossan, 1998: 575). 그에 따르면 이방신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단지 이방의 존재이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도 아니며, 하나님과 경쟁자이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불의, 다시 말해 신적인 능력을 남용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들은 땅 위에 사는 인간 공동체 속에서 정의를 요구하지도, 정의를 실천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처럼 죽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의를 등한시 하는 행위의 유형이 변명의 여지없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크로산은 “시편 82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심판의 방식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간들에 의해 어떤 존재로 판정받길 원

하시는지도 보여 준다”고 말한다(Crossan, 1998: 575-6).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에 의해 모든 나라 중에 정의의 심판이 이뤄지는데 있다(Miller, 2010: 25). 크로산이 말하듯 이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으며, 그 핵심은 정의이다. 이 하나님은 정의의 제정자요, 종국적 심판자로 표현되고 있다. 실제로 신성(神聖)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정의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정의는 신성함의 여러 속성을 중 하나가 아니라 신성함 그 자체이다. 창조주의 주권적 질서에 대한 인간의 뿌리 깊은 반항심에도 불구하고 성속(聖俗)은 분리되지 않는다. 속(俗)에서의 정의와 불의는 영적 세계의 심판의 결과를 좌우한다. 시편 82편은 영적 세계의 신비한 구속과 심판의 역사가, 인간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정의를 매개로 서로 엮여 있음을 보여준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의의 거룩한 특징이 인간의 삶에 투영되어 있음을 증언한다. 미가<sup>14</sup>)와 아모스 선지자<sup>15)</sup>에 의하면 정의는 사회적 의무의 목표이자 선이라는 개념 자체이다(Miller, 2010: 26). 그런 점에서 성경적 법을 통해 현실에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최우선의 원리는 성경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와 무관하게 추구되는 이른바 세속적 정의와 성경적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과연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한 생존과 번영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할 수 있는가? 세속적 정의의 담론들과 교류하며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가? 세속적 정의 담론에 질리거나 좌절한 세상에 새로운 충격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의와, 이를 핵으로 한 성경적 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기존의 실정법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의 모색이 성경적 법을 통한 기존 실정법들의 지평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기독교 법학자들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들은 그 자체로 거대한 담론인 까닭에 한번에 다뤄질 수는 없다. 일단 이 글에서는 성경적 법을 통해 드러난 사법적 정의가 현대적 법률제도나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를 통해 세속의 법률 체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14)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 냐” (미가 3:1)

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모스 5:15).

## 2. 차별성의 몇 가지 예시

### (1) 정의의 소재

성경에서의 정의에 관한 사상은 항상 초월적 성격을 지닌다. 하나님이 정의의 원천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거룩한 신적 정의의 활동은 흑암 가운데서 질서를, 선과 악을 구분시키는 창조 사역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주에 세운 질서와 인간 사회 속에 세운 정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Curtis, 1988: 12). 정의는 지구라는 소우주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바른 질서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믿음을 단순한 가설이나 전제가 아닌 출애굽 사건을 통해 드러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시공간에 개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과 회고(후대)에 두고 있었다(Burnside, 2011:105). 이에 비하여 현대 법학의 대표적 철학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계약론은 사회는 신성한 의지와는 무관하게 단지 구성원들 사이에 약속을 맺어서 다 같이 살아가는 곳일 뿐이며, 법 규범 역시 그러한 약속이나 합의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Bevir, 2010: 1291). 자연 상태 하에서의 누릴 수 있었던 무제한적인 자유의 허용에 대한 무한한 갈증들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서 법을 보는 까닭에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는 얼마나 그 기능에 충실한가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정의는 인간의 이성에 자리 잡고 있다. 정의가 필요한 순간, 다시 말해 불의가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순간 현대 법 체계에서는 인간 이성을 최후의 보루로 삼게 되는데<sup>17)</sup>, 이는 A라는 인간(또는 집단, 계층)이 빚어내거나 확대시킨 불의에 대한 평가와 시정을 다른 인간 B의 최종적 이성에 맡기지만, 성경적 법에서는 초월적이지만 성문으로 존재하고 있는 토라 속에서 찾게 된다. 전자의 경우 B의 주관이 개입할 요소를 배제할 수 없고, A의 불의가 정치 역학 속에서 구조적으로 창출된 것이라면 B의 이성적 판단은 처음부터 배제되거나 상대진영과의 지리한 정치적 소모전으로 결론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의 법적 사고에서는 애매한 양시양비론

16)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4)

17) 이것은 특별히 실정법, 관습법, 판례 등 이른바 적용할 법원(法源)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다.

속에 선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조차 정의라고 불리우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런 부조리는 법 개념에서 가치를 배제하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 (2) 법의 기능

현대의 법은 인간이 갖는 권리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의무는 통상 동전의 앞뒷면의 비유를 통해 권리의 반대 측면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현대의 사법 판정은 침해된 권리의 회복에 주안을 두게 된다. 그러나 성경적 법은 당사자들이 피조물로서 “신성하게 명(命)받은 사회적 질서(divinely mandated social order)”에 맞춰 그 정체성을 회복 시켜 주는데 있다(Burnside, 2011: 108). 따라서 분쟁은 개인적 권리 다툼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준다는 성격이 강하다(Jackson, 1998: 227). 예컨대, 레위기 25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희년은 땅으로부터 유리된 사람들에 대한 회복은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적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산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은 미리 정해진 질서에 따라 자신의 분복을 주장할 수 있었다.<sup>18)</sup> 어떤 이들은 성경적 법을 통한 사법판정의 목적을 당사자들 사이의 질서 회복이 아니라 에덴 또는 에덴을 통해 대표되는 그 질서의 회복에 두기도 한다(Burnside, 2011: 109). 질서와 정체성의 회복에 초점을 두게 되면 현실적으로 질서의 침해가 없더라도 공동체 차원에서는 ‘있어야 할 그 무엇’에 대한 상(像)을 늘 그리게 되고, 구성원들은 이를 하나의 사회적 DNA로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회복이 목적이 되어 있는 현대 법 체계 하에서는 ‘침해 당한 권리’들이 사회적 이상에 부합하는 통일적 가치체계로 승인되어 공통의 DNA로 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그 권리들은 사후적 구제의 대상에 머무는 단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 (3) 책임소재의 보편성, 모두에 의한 정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전 민족이 신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성경적 정의의 특징은 ‘풀뿌리(grass roots)’라고 할 수 있다

18)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니라 (레위기 25:23).

(Burnside, 2011: 110). 여기서의 풀뿌리는 현대의 대중 민주주의의 상징적 용어와는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중 민주주의의 가치로서의 풀뿌리는 권리 중심이지만, 성경적 법에서 말하는 풀뿌리는 책임의 저변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일관하여 정의에 대한 추구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소수에게 전가되거나 위임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 정의에 종교적 믿음이라는 영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감사함에 예외가 없듯이 정의를 시행할 각자의 책임에도 경중은 없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성경적 법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로 시내 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대한 비준에 참여해야 했던 의식 속에 투영되어 있다. 전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제시된 법규, 율법 및 계명을 알아야 했다(출애굽기 21:1, 24:12, 레위기 10:11, 신명기 17:10-11). 위증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정의를 굽게 하는 행위, 뇌물을 받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지는 판관들 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교훈이었다(출 23:1-18). 이런 식으로 정의는 공동체적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신명기에서는 이 점이 명백하게 선언되고 있다.

"(19)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16장)

19절은 판관들을 향한 가르침이지만, 20절은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에서 보듯이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계명이자 약속이다. 공의를 따르는 일은 직업적 판관이나 보통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정의(justice for all)는 모두에 의한 정의(justice by all)의 다른 표현이다. 현대인들의 사고는 일상에서의 정의의 실천을 정부 당국이나 전문 직종, 예컨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몫으로 미뤄두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들의 부정직과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에는 분노하면서 막상 자신은 일상에서 중인으로서의 역할은 회피하거나, 또는 법정에서 위증을 쉽게 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불의한 이득을 챙기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는 이중적인 행태들은 전형적인 ‘우리를 위한 정의(justice for us), 당신들에 의한 정의(justice by you)’의 문화를 보여준

다. 이것은 권리 중심의 현대 법 체계가 가져온 부작용의 일부로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상한’ 현실을 부추기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4) 분쟁 해결의 자치성 및 선제성 원리

성경적 법에서 보여주는 사법적 판정과 관련한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그 분쟁의 해결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서는 안 되었다. 성경적 법적 사고는 역설적으로 가능한 사법 판정을 피하도록 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이 사고는 부분적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의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책임 하에 놓인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여주기에 충분한 적들을 향한 관용의 태도에 있었다(Burnside, 2011: 112).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분쟁 예방을 위한 성경적 법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벼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출애굽기 23:4-5).

특히 이 구절은 사법절차에서의 정의와 관련된 일련의 금지명령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짓된 풍설을 펴뜨리거나, 위증을 하거나, 뇌물을 받는 행위와 같은 반열에 들어 있는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은 소송의 원인이 되고, 소송은 중요심의 결과인 경우가 많은 까닭에(Jackson, 2006: 403-5) 소송을 부추기는 감정의 고양은 스스로 막을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부득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제3자의 개입을 피하고 가능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법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다 (예, 신명기 21:35-6, 출애굽기 22:1-4).

자율적 분쟁해결의 우선 원리는 예수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예수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부터 하여야 하고, 만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다면 급히 사화하여 재판관에게 그 사건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하셨다(마태복음 5:23-5). 뿐만 아니라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가져와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며 냉정하게 거절하셨다(누가복음12:13-14). 권리 중심의 사고가 분쟁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현대의 법 체제가 공적 소송절차의 이용을 부추긴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적 법은 성경적 법이 요구하는 정도, 다시 말해 내면의 감정부터 제어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수준의 사회적 갈등 감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sup>19)</sup> 법학 교육에 성경적 법이 갖는 이런 원리가 도입된다면 공동체 내의 관계망들의 단절 위험성, 그리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 V. 나가며

성경적 관점에서의 법은 목적과 가치지향적 속성을 가지는 바,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편협성을 벗어날 뿐 아니라 한 국가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공정성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사회 규칙들을 재평가하고 정비하기 위한 필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치중립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 법 개념의 확장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법 개념이 갖고 있는 실정법적 구속력 역시 법 개념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은 전반적인 사회적 틀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복합적 규범 체계라는 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성경적 법은 충분히 현대적 법학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에 궁극적인 지혜와 정의가 있다는 신조가 기독교적 학문의 바탕이라면 크리스천 학자들은 보다 담대하게 세상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도전적인 물음을 던지며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논의의 주변에

---

19) 각종 소송의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분쟁을 부추기는 듯한 변호사들의 광고는 직업상 그렇다 치더라도 분쟁의 사전 예방보다는 소송구제의 용이함을 내세우는 사법서비스, 예컨대 법원이 전자소송 등을 개발하여 공중파 라디오와 같은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여 ‘쉽고 싼 소송 기법 개발’을 성과로 내세우는 행위 등은 사회 내에서 사법이 갖는 기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서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이다(이호선, 2013: 217).

모세 오경의 편집시기를 둘러싼 논쟁이나 성경적 법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주장 등은 성경적 법이 갖는 역사적 의의나 규범성을 폄하시키지 못한다. 현행 실정법 규범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존재 의의가 부정되지 않듯이 인간의 실패가 성경적 법규범의 유용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경적 법은 고대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신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이념과 진정한 법치정신의 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 적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 기존질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장려함으로써 오는 사회변혁의 역동성, 지엽적이며 단편적인 법적 사고를 입체적으로 법을 파악하게 하는 통시적 역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경험 이 바탕이 되는 내면에서의 준법의식이 주는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는 여타의 실정법적 사고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성경적 법만이 갖는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 구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허용된 사회 규범으로서의 성경적 법은 정의를 핵심으로 하면서 성속(聖俗)이 분리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 법학자들에게는 기존 실정법과 제도들을 재평가하고 검증에 도전하도록 자극한다. 정의를 인간 이성이 아닌 성경 텍스트에 두는 성경적 법은 불의를 보는 눈을 보다 객관화시키고, 그 교정의 필요성을 더욱 담대하게 설득하도록 한다. 또한 법의 기능을 권리 회복이 아닌 정체성의 회복에 둘으로써 사회적 DNA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공동체 연대 의식을 함양한다. 나아가 정의 구현의 책임을 소수가 아닌 모두의 책임에 두어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리 과잉이 ‘모두에 의한 정의(justice by all)’를 통해 균형 잡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자발적이며 선제적인 해결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관계 단절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도 성경적 법은 사후적 분쟁 해결에 주안을 두는 현행 실정법 체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은 크리스천 법학자들 및 법조인들은 물론 종교를 떠나 순수하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성경적 법은 현대 법학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진지한 학문적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을 일깨워 준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선종 (2011). “토라! 율법인가, 이야기인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규정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64집. 7-28.
- 남기윤 (2011). “근대 자연법론과 판덱텐의 현대적 관용(慣用) 시대의 법학방법론 (1600~1800):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방법론 연구(7)”. 『안암법학』. 제34권. 1-70.
- 미즈바야시 다케시 (2009). “일본 근대법 체계의 역사적 특질 부론(附論)”. 『법사학 연구』. 제40호. 58-62.
- 왕대일 (2011). “토라와 오경: 토라의 구성에 대한 정경적 해석”. 『Canon&Culture』. 제5권 제1호. 5-36.
- 양수산/최완진 (2010). 『법학통론(제4판)』. 서울: 세창출판사
- 이호선 (2013). “성경적 원리로서의 자산기반 복지”. 『신앙과 학문』. 제18권 제4호. 213-255
- 임상국 (2012). “구약성서의 법전과 메소포타미아 법전과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신학과 세계』. 제74호. 7-31.
- 최종고 (1994). “법치주의와 덕치주의: 한국의 관점”. 『저스티스』. 제27권 제2호. 303-308.
- 홍영기 (2005). “법 개념 요소의 법비판 작용”.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111-134.

### 국외문헌

- Adams, Robert (2001). *Finite and Infinite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 Allott, Philip (1998). “The true function of law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 J. GLOBAL LEG. STUDS.* 5. 391 - 413
- \_\_\_\_\_ (2002). *The Health of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vir, Mark. et al. eds. (2010). *Encyclopedia of Political Theory*. London: Sage
- Burnside, Jonathan (2011). *God, Justic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ules (2003). *The Practice of Principle: In Defence of a Pragmatist Approach to Leg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Curtis, Adrian (1988). “God As Judge, in Ugaritic and Hebrew Thought”. IN Barnabas Lindars eds. *Law and Religion: Essays on the Place of the Law in Israel & Early Christianity*. Cambridge: James Clarke.
- Dworkin, Ronald (2002). “Thirty years on: Review of Jules Coleman The Practice of Principle”. *HARV. L. REV.* 115, 1655-87.
- Fahlbusch, Erwin. et al. eds. (English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 1997). *Encyclopedia Christianity*. Eerdmans Publishing.

- Finnis, John (2011). *Philosophy of Law: Collected Essays Volume IV*. Oxford University Press.
- Hahnel, Robin (2005). "Economic Justic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37. 131-154.
- Halberstam, Chaya (2013). "Wisdom, Torah, Nomos: The Discursive Contours of Biblical Law." *Law, Culture and the Humanities* 9 (1). 50-58
- Hart (1955). "Are There Any Natural Rights?" *Philosophical Review* 64. Reprinted IN Carl Wellman. eds. (2002). *Rights and Duties vol. 4: Human Rights and Universal Duties*. Routledge.
- Hovenkamp, Herbet (5th ed., 2011). *Antitrust*. MN: Thomson Reuters.
- Jackson, Bernard (1973). "Reflections on Biblical Criminal Law". *J. OF JEWISH STUDS*. 24. 29-37.
- \_\_\_\_\_ (1984). "The ceremonial and the judicial: Biblical law as sign and symbol". *J. STUD. OLD TESTAMENT* 30. 25-50.
- \_\_\_\_\_ (1998).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the Bible: Rule of law or royal paternalism?"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4. 218-62.
- \_\_\_\_\_ (2006). *Wisdom-Laws: A Study of the Mishpatim of Exodus 21:1-22:16*.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 Dominic Crossan (1998). *The Birth of Christianity: Discovering What Happened in the Years Immediately after the Execution of Jesus*. San Francisco, CA: Harper
- Katsh, Abraham Isaac (1977). *The Biblical Heritage of American Democracy*. Ktav Pub.
- Luhmann (2004). *Law as a Social System*. Ziegert, K. (trans.). Kastner, F., Nobles, R., Schiff, D. and Ziegert, R. (eds). Oxford University Press.
- Marx, Karl (1859). *Preface And Introduction To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eprinted IN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76).
- Miller, Patrick (2010). "Divine Command/ Divine Law: A Biblical Perspective."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3(1), 21-34.
- Moatti, Claude (1989). *À la recherche de la Rome antique*. Paris: allimard Jeunese. 김윤 역(2996). 『로마를 찾아서』. 서울: 시공사.
- Otto (1999). "Human Rights: The Influence of the Hebrew Bible".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25. 1-20.
- Philippopoulos-Mihalopoulos, Andreas (2010). *Niklas Luhmann: Law, Justice, Society*. NY: Routledge.
- Sabbagh, Clara et al. (2010). "Intergenerational Justice Perceptions and the Role

134 『신앙과 학문』. 20(1).

of Welfare Regimes: A Comparative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Administration & Society*. Vol 42. 638-665.

## ABSTRACT

# Expanding The Prospects of Modern Jurisprudence Through The Biblical Law

Ho-Sun Lee (Kookmin University)

It is not easy to answer what the nature of law is. In general, the contemporary legal concept tends to exclude something valuable, such as justice or purpose, while considering the law as positive ones which have binding forces.

Due to the growth of unfairness and injustice beyond a state in global level as well as in a state, and to the social conflicts and costs being incurred from the im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personal level, the traditional concept of law has to be changed.

Most of all, when trying to change the concept of law,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binding nature is not requisite for the defining concept of law, and the law itself is the systematic complex norms shaped within the comprehensive frames.

These ways of understanding w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modern law to share its sphere with the biblical one substantially, and for us to get abundant inspirations from the biblical law. If we consider the biblical law as something from the limited point of view such as a nation like Israel, or religion like Christianity, we would make mistakes by overlooking its historical and universal characteristics. There are several unique advantages found only in the biblical law which are seldom in the modern legal thinking. For example, durability being shown in historical events, dynamic challenging energy by the basic question on the existing orders, three-dimensional perspectives on the legal system, and the internal expansion of norm observance attitudes.

The Bible declares that justice, the highest principle in the modern law, is representing the divine nature of God, and its sources are in God. This approach can secure the impartiality in resolving disputes more easily than depending on only positive law approach. For the rich and powerful people are able to secure their lot without appealing to the Bible.

Furthermore,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biblical law and the modern one in that the former puts the role of law in recovering one's identity as a community member rather than recovering violated rights, assigns the responsibilities for justice to everyone rather than to the upper minority, and reserves the court trial as last resort.

These characteristics show the opportunity that the biblical law can open a new prospect in the modern jurisprudence leaning on the modern law positivism.

Key words: Biblical law, Pentateuch, Law concept, modern jurisprudence, law positivism, justice